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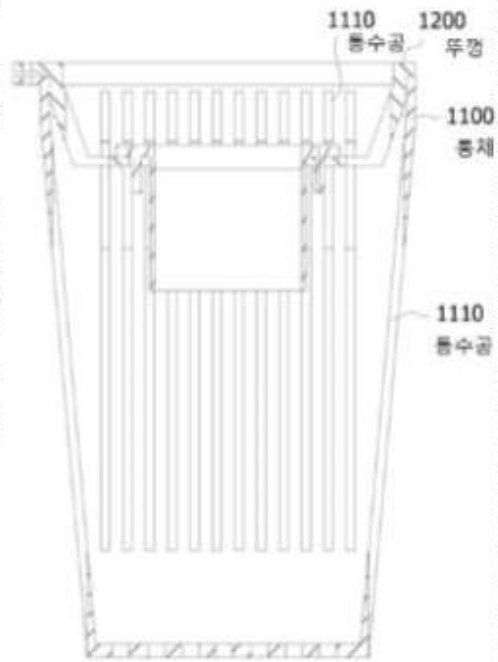
[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청구항 1】 두족류 각 개체의 서식을 위한 통체와 상기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되는 뚜껑과, 상기 통체와 뚜껑에 다수개의 통공이 형성되는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통체의 상부는 직경이 넓고, 하부 해수배출부는 직경이 좁은 상광하협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통체에는 통수공이 "1"자 형상의 긴 장공 또는 원형으로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함으로써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뚜껑이 형성되는 해수유입부는 유속이 늦지만 두족류가 머무는 해수배출부는 유속이 빨라지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식별번호 [0013] 참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수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두족류 배설물의 배출을 쉽게 하여 항상 통체 내부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청소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두족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식별번호 [0014] 참조)



[도 2] 두족류 양식장치의 종단면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두족류를 넣어두기 위하여 해수가 통과하는 구멍이 형성된 통체와 뚜껑으로 구성된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의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되는 뚜껑'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 그 설명서 문언에 의하면 "상기 통체의 상측에서 끼움 결합되어 개방된 일면을 폐쇄하도록 양측에 길이방향을 따라 레일이 형성되고, 상기 구획공간과 마주하는 표면에 복수개의 통공이 형성된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재와 도시를 참조하면 이는 '통체에 슬라이딩 결합되는 뚜껑'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위 구

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차이(차이점 1)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뚜껑은 두족류의 양식 장치인 통체 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한 부분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뚜껑을 열지 않고서도 위 먹이 투입구 부분을 통하여 먹이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은 통체에 레일을 통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달리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형성된 부분이 뚜껑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 굳이 먹이를 주려고 한다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된 뚜껑을 열어서 주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두족류가 밖으로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 대응 구성은 그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작용효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통체의 상부는 직경이 넓고, 하부 해수배출부는 직경이 좁은 상광하협형의 형상'인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통체의 폭이 짧은 쪽의 측면에서 상부 및 하부 간격을 측정해보면 상부 간격이 하부 간격에 비해 큰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대응구성은 통체의 형상이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광하협형의 모양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하부'에 해수배출부를 가지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폭이 긴 일측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1자형 통수공'을 통해 배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제1항 발명은 해수의 순환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두족류 배설물의 배출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 2는 상부는 '상광하협'의 형상을 갖추므로써,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하여, 뚜껑에 형성된 넓은 해수 유입부보다 하부에 위치한 좁은 해수 배출부가 유속이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체의 내부 구획공간에 일정 기간 두족류를 보관하기 위한 두족류 보관장치라는 점에 그 발명의 주된 의의가 있는데, 통체의 하부에 해수배출부로 작용할 수 있는 통수공의 구성이 없고, 그 해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변리사 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